

## 2017년도 제2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

2017년도 제2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17년 3월 13일

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 채용분야 및 인원

근무예정서부	채용예정분	채용예정직	채용예정급	채용인원	계약기간	직무내용
보건소 보건행정과	관리의사	일반임기제 5급		1명	3년	○ 일반진료 ○ 건강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 판정 및 발급 ○ 운전면허 적성검사 판정 및 발급 등
농정과	가축방역요원	시간선택제 임기제"마"급		2명	2년 (주35시간)	○ 가축방역업무 ○ 가축방역차량 운행 등

※ 향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5년 범위내에서 연장여부 결정

### 2 응시자격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거나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,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.

※ 주소, 성별, 연령 : 제한 없음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**<<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>>**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**<<기타 결격사유>>**

1.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.
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의하여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,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(이하 "영리사기업체"라 한다)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.



**응시자격 요건** 다음 자격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채용예정 직급	채용자격 기준	비고
<p align="center"><b>관리의사</b> (일반임기제 5급)</p> <p align="center"><b>【보건 행정과】</b></p>	<p><b>· 의료법 제77조에 의한 「전문의」자격이 있는 자로서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</li> <li>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4.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5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6.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 align="center"><b>【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】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: 의학과</li> <li>1. 실무경력 :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동법 제3조에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관련 경력</li> </ol> <p>※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: 별지6호 서식 (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)</p> <p>※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</p>	
<p align="center"><b>가축방역요원</b> (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"마"급)</p> <p align="center"><b>【농정과】</b>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※ 추가필수 자격요건 :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</p> <p>※ 직무분야 실무경력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<sup>(1)</sup>에서 가축방역업무 근무경력</p> <p>(1)공공기관: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·고시한 기관</p>	

- ※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김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(시간선택제)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.
- ※ 직무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### 3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# 응시원서 접수

- ① 접수기간 : 2017. 3. 23.(목) ~ 3. 27.(월) <3일간> 근무시간 내 09:00~18:00까지  
 ※ 토요일, 일요일 제외
- ② 접수장소 : 김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(본관 2층)  
 ※ 위치 :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(사우동)
- ③ 접수방법 : 방문제출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(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접수함)

- ※ 주소 : 우편번호 10109 김포시 사우중로 1(사우동), 김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 앞
- ※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,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김포시 수입증지 미첨부 시 응시수수료(5급 10,000원, 마급 5,000원)를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 동봉

#### 시험일정

- ①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일정 통보,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추후 공고

#### 시험방법

- ① 1차시험(서류전형)
  - 시험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 심사
- ② 2차시험(면접시험)
  - 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
  -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전문지식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③ 합격자 결정
  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  -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.

## ①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

-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
- 응시수수료 : 김포시수입증지 첨부(5급 10,000원, 마급 5,000원)

(응시원서 제출 전 인사담당 서류 검토 후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)

## ② 이력서(별지2호 서식) 1부

## ③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

##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(별지4호 서식) 1부

## ⑤ 직무수행계획서(별지5호 서식) 1부

##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-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에 한함(외국학교 졸업자는 변호사 공증 받은 번역문과 함께 해당 국가의 공관 등에서 발행한 졸업증명 확인서 첨부)

## ⑦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(별지6호 서식) 1부

-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,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(허가)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.
-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, 근무부서만 표기된 증명서는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 (근무기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표기 필수)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, 미제출시 불인정

## ⑧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(별지7호 서식) 1부

##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
(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

- 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

## ⑩ 자격요건 관련 해당 자격증(해당자에 한함)

※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

5

**기 타 사 항**

보수수준(연봉)

- ✓ 일반임기제 5급 : 56,338천원
- ✓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감(주35시간) : 19,346천원

※ **최초연봉액**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**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** 책정하되 임용대상자의 자격·능력에 따라 **조정하여 책정가능**

※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연봉외 급여(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, 시간외 근무수당 등)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

-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,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복무는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및 「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」 등을 적용 합니다.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gimpo.go.kr>) 시험정보란에 공고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예정분야	담당부서	업무관련 문의
채용절차	행정지원과	031-980-2104
관리의사	보건소 보건행정과	031-980-5007
가축방역요원	농업기술센터 농정과	031-980-2826